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자 연 재 난 구 호 및 복 구 비 용 부 담
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를 제외하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분제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 차액 지급 가능 규정 신설(안 제6조제5호)

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기업·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

나.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 재난지수 합산 제외 근거 신설

(안 제3조, 제9조)

인명피해 재난지수는 재난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,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

다.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 및 재원 부담률 신설(안 별표1 제2호사목3)아))

라. 국고 추가 지원을 산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(안 별표2 제2호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제4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“보통세”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보통세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자금의 용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, 주택복구자금의 용자

제6조제5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제1항 중 “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

다.

1. 제4조제1항제1호가목: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
2.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: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른 금액

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입식 신고: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20일 이내(단, 재난 발생 전에 입식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해당 재난 피해 복구 지원)

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가족관계증명서

별표 1 제2호에 사목3)아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)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 치	설치에 드는 금액	(1) 국고 50퍼센트 (2) 지방비 50퍼센 트	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2 제2호 중 “0.9”를 “0.8”로, 같은 호 중 “0.1”을 “0.2”로 하며, 같은 호 제2항 비고 제4호 중 “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, 저수지”를 “저수지”로 한다.

별표 3의 16의 재난지수란 “41,201~42,500”을 “42,001~42,500”으로 하고, 같은 표 18의 재난지수란 “41,000~41,500”을 “41,001~41,500”으로 하며,

같은 표 28의 재난지수란 “36,010~36,500”을 “36,001~36,500”으로 하고,
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“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
하지 못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”를 “지방비 총 부담
액이 제7조 각호의 금액 이하인 특별재난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비고 제3
호 중 “제4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”으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민등록등록표 등본
2. 소득금액증명
3. 가족관계증명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재난지수”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<u>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</u> 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 <u>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</u> ----- -----.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보통세”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(區稅)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·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.	8. “보통세”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보통세를 말한다.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) ① (생략)	제4조(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<u>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·염생산업인의 자금</u>	라. <u>자금의 용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</u>

용자, 농업·임업·어업·엽
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
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용
자, 주택복구자금의 용자

마. (생략)

2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
난복구 비용 등)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
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
원을 하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·지
방자치단체·공기업·지방공
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
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
지원되는 경우 <단서 신설>

6. ~ 8. (생략)

제9조(재난지원금의 지원 등) ①

원, 주택복구자금의 용자

마. (현행과 같음)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
난복구 비용 등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경우. 다만, 복구비와
보상비 등이 제9조제1항에 따
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
경우 그 차액은 그러하지 아
니하다.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재난지원금의 지원 등) ①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-ruled paper.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, each set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. Thes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for young learners. The paper is otherwise blank, with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.

① -----

--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4조제1항제1호가목: 행정
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

2.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
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
터 바목: 각각의 재난구호 및
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

② (생 략) 1. 입식 신고: 입식할 때마다 입 식일부터 <u>10일 이내</u> 2. (생 략) ③ (생 략) 1. ~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 표에 따른 금액</u>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20일 이내(단, 재난 발생 전에 입식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해당 재난 피해 복 구 지원)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가족관계증명서</u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복구지원과	
연 락 처	044-205-5315